

# 유럽연합(EU)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현황 및 시사점

CSR현황 I

김선민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

## I. 서론

과거 대부분의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태만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하였지만, 근래 들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비재무적 정보 또는 ESG 정보란 일반적으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관련된 정보를 일컬으며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기업의 장기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기도 하다.

국내 기업은 주로 지속가능보고서나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공시 범위 및 내용이 불충분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하더라도 주로 대기업 위주여서 투자자들이 그 외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알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비재무적 정보 공시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투자자의 의사결정 정보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올바른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유럽에서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는 등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은 지난 2006년부터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계지침(the Accounting Directive<sup>1)</sup>)<sup>2)</sup>을 통해 비재무적 정보를 매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EU회원국은 회계지침에

1) EU법의 한 형태인 Directive는 EU 회원국이 달성해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directive가 마련되거나 개정될 경우 모든 EU회원국은 정해진 기간 안에 관련 내용을 자국법에 도입해야 함. 단, directive 적용 및 실행 범위를 정하는 것은 회원국의 재량에 달려 있음

2) 78/660/EEC, 83/349/EEC를 의미함

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이상으로 비재무적 정보 공시 요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등 관련 정보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원고에서는 EU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현황을 살펴보고 아직 비재무적 정보 공시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II. EU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현황

### (1) 현황

EU는 회계지침(the Accounting Directive, 이하 ‘지침’)을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 현황, 발전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ESG 정보를 매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따르면,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기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유럽의 약 2,500개의 기업들이 CSR보고서 및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통해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유럽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위한 노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영국,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프랑스 등 EU 일부 회원국은 EU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엄격한 요건을 도입하여 ESG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ESG 정보 공시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4년 네덜란드의 경제·농업·혁신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는 Transparency Benchmark<sup>3)</sup>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 대기업의 CSR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법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양질의 CSR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EU 회원국의 비재무적 정보공시 법·제도 도입현황은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3) 경제·농업·혁신부는 ISO26000, GRI, RJ400을 토대로 만들어진 질문지를 기업들에게 제공하여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있음

〈표 1〉 EU회원국의 비재무적 정보공시 법·제도 도입 현황

국가	관련법 또는 규정	내용
덴마크	Danish Financial Statement Act (2008)	1) 약 1,100사의 대기업은 사업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기재해야 함 ① CSR 정책 ② CSR 정책 시행 내용 ③ CSR 정책 시행 결과 및 전망 2) 비재무적 정보공시 의무 대상 기업 요건 ① 자산총계가 1억4,300 크로네(DKK)인 기업 ② 순수익(net revenue)이 2억8,600 크로네(DKK)인 기업 ③ 정규직 근로자가 평균 250명인 기업 3) 모회사가 그룹차원에서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할 경우, 자회사는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가 면제됨 4) 사업보고서에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할 경우, 경영진의 검토의견이 담겨 있어야 함
프랑스	Law NO. 2001-420 (2003)	1) 상장기업들은 사회·환경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함 관련법 개정으로, 2014년부터는 비상장 기업(정규직 근로자 500명 이상, 자산총계 1억 유로 이상)도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해야 함 2) 비재무적 정보공시 의무 대상 기업 요건 ① 상장기업 (향후 비상장기업도 포함될 예정) ② 정규직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기업 ③ 3년 연속 수익(revenue)이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
네덜란드	Dutch Civil Code	1) 재무적 정보를 비롯한 환경, 근로자, ESG리스크 에 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함 관련정보를 공시할 경우, 기업은 재무상태,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2) 상장·비상장 기업 모두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가 있음 3) 이사 할당제(gender quotas)가 도입되었으며, 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함 만약,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함
스페인	Sustainable Economy Act (2011)	1) 공기업(state-owned companies)은 매년 지배구조 보고서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해야 함 관련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 및 성평등에 주안점을 두어 작성해야 함.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동 보고서를 '사회적 책임 위원회(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uncil)'에 보고하여야 함 2) 이사회 다양성 Spanish Organic Law on gender equality(2007) 75조에 따르면, 대기업은 2015년까지 이사회 남녀성비를 각각 40%로 맞춰야 함. 이는 권고사항이며,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음
스웨덴	Guidelines for External Reporting by State-Owned	1) 공기업은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야 함 지속가능보고서에 환경, 인권, 이사회 다양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야 함

국가	관련법 또는 규정	내용
	Companies (2007)	2) 지속가능보고서는 제3자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에 맞춰 제출해야 함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함
영국	Companies Act (2006)	1) 모든 기업은 매년 Business Review <sup>4)</sup>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기업은 Business Review에 환경, 근로자, 사회이슈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해야 함. 만약 내용이 공시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정보가 공시되지 않았음을 명시해야 함

\*참고: europa.eu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EU 회원국마다 비재무적 정보 공시와 관련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보 공시 대상 및 공시 내용의 범위에는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이 비재무적 정보 공시 대상을 상장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네덜란드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 상장기업만 공시 의무가 있으나 2014년부터는 비상장기업 역시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해야만 한다.

〈표 2〉 EU회원국별 비재무적 정보 공시 대상 범위

국가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공기업
덴마크	○		
프랑스	○	△*	
네덜란드	○	○	
스페인			○
스웨덴			○
영국	○	○	

\*프랑스의 경우, 향후 비상장기업도 비재무적 정보 공시 대상 범위에 포함될 예정임

이렇게 회원국마다 공시 범위 및 공시 내용이 다를 경우,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투자자는 기업간의 비재무적 정보를 비교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존 회계지침은 일부 대기업에 한정하여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 내용 및 공시 범위에 대해선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EU내에서 새로운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4) Business Review는 전략보고서(Strategic Report)로 대체되어 보다 자세한 환경·사회 정보를 제공할 계획임

## (2) EU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방안

### A. 배경

최근 들어 EU에서는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제기 되고 있다. 이는 기존 지침이 기업 전체가 아닌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어 비재무적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sup>5)</sup> 또한 공시되는 비재무적 정보의 내용이 회원국마다 달라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는 물론 사회·환경에 관한 정보를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3년 4월 16일, 유럽위원회(EC)는 유럽 대기업의 사회·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회계지침(Accounting Directive)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B. 내용

동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은 고용, 인권보호, 반부패·뇌물수수, 이사회 다양성(성별, 나이, 출신지, 학력)등에 관한 정책을 비롯하여 ESG 리스크 관리, ESG 정책시행 결과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아래 <표 3>의 3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를 충족시키는 기업일 경우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이 된다.

<표 3> 비재무적 정보공시 의무대상 기업

- 근로자 500명 이상의 기업
- 자산총계가 2,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 수익(revenue)이 4,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출처: 78/660/EEC 46(1)(b) & 83/349/EEC 36(1)(a) 개정안

따라서, 해당 기업은 사업보고서상에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할 때 기업의 ESG 정책설명, 정책시행 결과, 기업의 ESG 리스크 및 ESG 리스크 관리방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sup>6)</sup>

그러나 유럽에서 ESG 정보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EC가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하자 유럽의 재계단체인 BusinessEurope은 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였다. BusinessEurope은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CSR활동을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성장

5) 기존 지침에는, 중소기업(SMEs)은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대상이 아님

6) 동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 연도에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의 경우 비재무적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아도 됨. 또한, 모회사가 통합보고서를 발간하는 경우 자회사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는 면제됨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이미 성장한 대기업만이 CSR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EC는 유럽이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ESG 정보 공시를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유럽 재계 로비단체인 BusinessEurope과 달리 유럽의 사회책임투자포럼(Eurosif), 네덜란드 지배구조포럼(Eumedion),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등의 ESG 관련 기관들은 EC가 제안한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동 방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ESG 정보를 필요로 하는 유럽 및 해외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투자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에서 ESG 정보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Eurosif와 영국 공인회계사협회(ACCA)는 ESG 정보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 EC가 발의한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방안에 대해 투자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주로 지속가능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비재무적 정보를 얻고 있었으나, 응답자의 78%는 현재 비재무적 정보 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불충분한 비재무적 정보 공시로 인해 유럽의 투자자는 기업의 주요 ESG 리스크와 기회요소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EC는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방안이 통과되면 이를 공시하는 기업이 2,500사에서 18,000사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양질의 ESG 정보를 보다 용이하고 비용·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어 투자결정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C는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가 활성화 될수록 ESG 리스크를 잘 대처하게 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 C. 한계점

유럽위원회(EC)가 제시한 개정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럽의 ECCJ(European Coalition for Corporate Justice)는 대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두고 있다. ECCJ는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 방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EC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은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 없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법적 맹점이 존재한다고 그들의 입장을

밝혔다. 즉, 동 법안은 Comply-or-Explain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일부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 간략한 설명만으로 해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정보 공시 프레임워크가 EU 내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비재무적 정보 공시 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는 점 역시 동 법안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urosif와 ACC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표준화된 비재무적 정보 공시 양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EC가 법안에서 제시한 정보 공시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6%는 지배구조, 공급망(supply chain), 기업의 특이사항, 업종별 특이사항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Ⅲ. 결론 및 시사점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ESG 이슈를 잘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하다는 것이 EU 회계지침 개정안의 주된 골자이다.<sup>7)</sup> 일부 EU회원국은 개별 국가차원에서 관련 정보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외에도 EU차원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U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ESG 정보 공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표 4〉참고).

〈표 4〉 ESG 정보 공시를 위한 해외 각국의 노력

국가	내용
미국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를 발행하여 상장기업들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중국 <sup>8)</sup>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SASAC)는 'Guidelines on Fulfill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를 발간하여, 지난 2008년부터 공기업의 CSR 정보공시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인도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Business Responsibility Report'를 매년 발간하

7) 현재 동 개정안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uncil)를 통과해야하는 상황임

국가	내용
	도록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JSE)는 상장기업에게 Comply-or-Explain 원칙을 바탕으로 통합보고서를 발간을 요구하고 있음

\*참고: europa.eu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 전체 1601개 상장기업 가운데 ESG 정보가 담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77개사에 불과하고<sup>9)</sup>, 한국거래소가 공시규정을 통해 녹색경영정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관련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자율공시 사항으로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7월 19일 사업보고서에 재무정보 이외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환경오염 방지활동 등 비재무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개정안에는 근무환경 및 안전실태,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경영 활동에 관한 사항, 기업 내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자 보호대책, 뇌물 및 부패근절을 위한 제도 등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ESG 정보 공시가 지금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환경 등 비재무적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고, 기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로 착한기업이 각광받고 있으며, 착한기업일수록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제도 환경을 마련하여 비재무적 정보 공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SASAC)의 '2011 중국 공기업의 보고 및 공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117개의 공기업 가운데 76곳(65%)이 지난 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 중 21개의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최초 발간함

9)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및 분석, 안상아, 기업지배구조리뷰 5·6월호, vol.68